
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200)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:(2210)보건·환경

세항:(2211)보건위생관리

세세항:(110)인건비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지	기	분
2000	사회개발비	192,528,193	163,053,514	29,474,679	[국 138,539,185 [균 600,000	도 38,763,079 기 14,505,959	지 0 분 119,970]	
2200	보건및생활환경개선	192,528,193	163,053,514	29,474,679	[국 138,539,185 [균 600,000	도 38,763,079 기 14,505,959	지 0 분 119,970]	
2210	보건·환경	192,528,193	163,053,514	29,474,679	[국 138,539,185 [균 600,000	도 38,763,079 기 14,505,959	지 0 분 119,970]	
2211	보건위생관리	26,471,508	19,567,396	6,904,112	[국 5,151,311 [균 0	도 6,737,898 기 14,462,329	지 0 분 119,970]	
100	경상예산	222,408	485,091	△262,683	[국 0 [균 0	도 212,658 기 9,750	지 0 분 0]	
110	인건비	19,500	0	19,500	[국 0 [균 0	도 9,750 기 9,750	지 0 분 0]	
	101 인건비	19,500	0	19,500					
		19,500	0	19,500	10 일시사역인부임 ○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(도) 19,500,000원 x 1명 = 19,500 (도) 9,750 (기) 9,750				
120	경상적경비	202,908	485,091	△282,183					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1 일반운영비	55,948	354,695	△298,747	
		55,948	354,695	△298,747	01 일반운영비 ○ 일반수용비 = 25,000 ○ 공공요금 및 제세 = 1,048 ○ 운영수당 = 14,700 ○ 급량비 = 14,700 ○ 시설장비유지비 = 500
	202 여비	141,620	125,656	15,964	
		83,300	79,000	4,300	01 국내여비 ○ 보건위생 업무추진 = 83,300
		58,320	46,656	11,664	02 월액여비 ○ 병원선 승선 여비 15,000원 x 18명 x 18일 x 12월 = 58,320
	203 업무추진비	2,400	1,800	600	
		2,400	1,800	60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보건위생 업무추진 = 2,400
	301 일반보상금	2,940	2,940	0	
		2,940	2,940	0	11 기타보상금 ○세균성이질등 전염병 역학조사 전문위원 활동 보상 35,000원 x 2명 x 42회 = 2,940
200 사업예산		26,249,100	19,082,305	7,166,795	[국 5,151,311 도 6,525,240 지 0] [균 0 기 14,452,579 분 119,970]
210 보조사업		23,814,713	17,918,644	5,896,069	[국 5,151,311 도 4,210,823 지 0] [균 0 기 14,452,579 분 0]
	201 일반운영비	48,753	113,877	△65,124	
		48,753	113,877	△65,124	01 일반운영비 ○공중보건 의사(역학조사관) 지속교육 = 4,500 (국) 4,500 ○전염병 관리자과정 교육훈련 = 4,000 (국) 4,000 ○전염병관리 전담요원 위탁교육 750,000원 x 34명 = 25,500 (국) 17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8,500 = 5,987 (국) 5,987 = 8,766 (도) 2,422 (기) 6,344
	202 여비	2,000	2,000	0	
		2,000	2,000	0	01 국내여비 ○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 여비 = 500 (국) 500 ○ 전염병관리 교육여비 500,000원 x 3명 = 1,500 (국) 300 (도) 1,200
	301 일반보상금	106,769	128,518	△21,749	
		91,326	121,798	△30,472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 = 20,798 (국) 10,399 (도) 10,399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에이즈환자 진료비 = 66,528 (도) 33,264 (기) 33,264 ○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2,000,000원 x 2명 = 4,000 (국) 2,000 (도) 2,000
		15,443	6,720	8,723	11 기타보상금 ○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 수행 = 5,243 (기) 5,243 ○ 역학조사관 진료활동비 350,000원 x 1명 x 12월 = 4,200 (국) 4,200 ○ 예방접종이상반응 역사조사 활동비 = 6,000 (기) 6,000
	306 출연금	4,680,000	3,387,125	1,292,875	○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= 896,000 (국) 448,000 (도) 448,000 ○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= 1,892,000 (기) 1,892,000 ○ 지방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= 1,892,000 (기) 1,892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7 민간이전	317,605	246,240	71,365	
		292,605	221,240	71,365	02 민간경상보조 ○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= 226,100 (도) 113,050 (기) 113,050 ○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 2,310,000원 x 4개소 = 9,240 (국) 4,620 (도) 4,620 ○건강생활실천사업 (도) = 50,000 (도) 25,000 (기) 25,000 ○만성병 감시사업 = 4,865 (기) 4,865 ○표본감시병의원 정보관리비 = 2,400 (기) 2,400
		25,000	25,000	0	05 민간위탁금 ○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= 25,000 (도) 12,5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(기) 12,5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10,484,176	11,947,431	△1,463,255	
		10,484,176	11,947,431	△1,463,255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임산부·영유아 건강진단 10,837,100원 x 70% = 7,586 (도) 3,251 (기) 4,335 ○선천성대사 이상검사 233,157,100원 x 70% = 163,210 (도) 69,947 (기) 93,263 ○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36,610,000원 x 70% = 235,627 (도) 100,983 (기) 134,644 ○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463,917,100원 x 75% = 347,938 (도) 115,979 (기) 231,959 ○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122,209원 x 58명 x 12회 = 85,058 (국) 42,529 (도) 42,529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○장티푸스외 3종	1,621,809,000원 x 30% = 486,543
					(도)	303,590
					(기)	182,953
					○B형수직감염 예방사업	68,400,000원 x 75% = 51,300
					(도)	17,100
					(기)	34,200
					○영유아 예방접종	724,960,000원 x 75% = 543,720
					(도)	181,240
					(기)	362,480
					○주요 전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	
					20,000,000원 x 75%	= 15,000
					(국)	10,000
					(도)	5,000
					○암조기검진사업	2,000,761,420원 x 70% = 1,400,533
					(도)	400,152
					(기)	1,000,381
					○암예방관리	115,900,000원 x 50% = 57,950
					(기)	57,950
					○금연클리닉운영	924,312,000원 x 75% = 693,234
					(도)	231,578
					(기)	461,656
					○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	146,500,000원 x 75% = 109,875
					(도)	36,625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(기)	
					(기)	73,250
					○건강생활실천사업 (시군) 1,887,280,000원 x 50%	= 943,640
					○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457,000,000원 x 50%	= 228,500
					○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1,200,000원 x 50%	= 20,600
					○보건소 건강증진사업 2,545,172,000원 x 50%	= 1,272,586
					○고혈압·당뇨관리 홍보사업 102,374,000원 x 50%	= 51,187
					○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운영 12,680,000원 x 75%	= 9,510
						(국) 6,340
						(도) 3,170
					○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4,373,000원 x 75%	= 3,280
						(도) 1,093
						(기) 2,187
					○전염병관리 교육 여비 (시군) 500,000원 x 48명 x 20%	= 4,8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국)	4,800
					○회귀·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	
					3,423,881,600원 x 60%	= 2,054,329
					(도)	342,388
					(기)	1,711,941
					○아동·청소년 정신보건사업 (2개소)	
					55,960,000원 x 75%	= 41,970
					(도)	13,990
					(기)	27,980
					○노인의치 보철사업	588,528,000원 x 60% = 353,117
					(도)	58,853
					(기)	294,264
					○치아홈메우기 사업	148,583,000원 x 60% = 89,150
					(도)	14,858
					(기)	74,292
					○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	
					319,200,000원 x 60%	= 191,520
					(도)	31,920
					(기)	159,600
					○수돗물 불소화 약품 구입비	51,000,000원 x 30% = 15,300
					(기)	15,300
					○알콜상담센터 운영	75,000,000원 x 75% = 56,250
					(도)	18,75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기)	37,500
					○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사업 6,400,000원 x 31.25%	= 2,000
					(기)	2,000
					○한방지역보건사업 5,000,000원 x 16개소 x 50%	= 40,000
					(기)	40,000
					○암치료비지원 1,066,268,000원 x 70%	= 746,388
					(도)	213,254
					(기)	533,134
					○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17,925,000원 x 1회	= 17,925
					(기)	17,925
					○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(시군) 117,000,000원 x 50%	= 58,500
					(기)	58,500
					○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운영 87,000,000원 x 75%	= 65,250
					(도)	21,750
					(기)	43,500
					○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41,600,000원 x 50%	= 20,800
					(기)	20,8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8,175,410	2,090,370	6,085,040	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424,300	0	424,300	01 일반운영비
					○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비 (지방이양)
					(도) 28,990
					(분) 20,293
					(분) 8,697
					○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비 (지방이양)
					(도) 4,997
					(분) 3,498
					(분) 1,499
					○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(지방이양)
					(도) 5,600
					(도) 4,088
					(분) 1,512
					○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(지방이양)
					(도) 8,713
					(도) 6,099
					(분) 2,614
					○병원선 관리 = 376,000
	206 재료비	235,290	223,290	12,000	○전염병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소독용 방역약품 구입
					25,000원 x 6,000리터 = 150,000
					○병원선 낙도주민 진료 82,790
					· 의약품비 (내과, 치과, 한방)
					14,000원 x 5,500명 = 77,000
					· 진료약포장지 50원 x 5,500명 x 12회 x 30% = 99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구급낭 약품보충 60,000원 x 40개 x 2회 = 4,800 ○ 부정불량식품 및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체 구입비 5,000원 x 500건 = 2,500
	301 일반보상금	2,160	0	2,160	
		2,160	0	2,160	11 기타보상금 ○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 (지방이양) 30,000원 x 6명 x 12월 = 2,160 (도) 1,512 (분) 648
	306 출연금	210,000	0	210,000	○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(지방이양) 52,500,000원 x 4개시설 = 210,000 (도) 105,000 (분) 105,000
	307 민간이전	182,800	178,800	4,000	
		43,000	43,000	0	02 민간경상보조 ○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단속 (한성협동회) = 3,000 ○ 에이즈예방 교육훈련 (에이즈예방협회) = 20,000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에이즈예방 홍보 (에이즈퇴치연맹) = 20,000
		139,800	135,800	4,000	05 민간위탁금 ○결핵약품 보급수수료 지원 (결핵협회) = 9,800 ○가족보건이동검진사업 (가족보건복지협회) = 40,000 ○한센병관리 진료사업 (한센복지협회) = 51,000 ○한센병환자 성형시술등 재활사업 (한센복지협회) = 21,000 ○저소득 한센병환자 보청기 지원 (한센복지협회) = 14,000 ○이동의료응급세트 장비관리비 = 4,0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846,072	598,946	247,126	
		646,072	598,946	47,126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한센병환자 진료지원 8,000원 x 363명 x 6회 x 50% = 8,712 ○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구입비 200,000원 x 30키트 x 30% = 1,800 ○결핵신환자 발견사업 (이동검진) 1,200원 x 46,000명 x 30% = 16,56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15,000원 x 1,500원 x 30% = 6,750
					○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지원 (유문등 설치 등) 1,000,000원 x 3개소 = 3,000
					○성인병 질환검진 25,000원 x 6,000명 x 20% = 30,000
					○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1,100원 x 11,000명 x 18회 x 30% = 65,340
					○가정간호사업 200원 x 50,000명 x 4회 x 30% = 12,000
					○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 200,000원 x 10개소 x 12월 x 30% = 7,200
					○치매환자 관리 49,500
					· 입원진료비 200,000원 x 90명 x 3월 x 30% = 16,200
					· 간병비 30,000원 x 30명 x 90일 x 30% = 24,300
					· 기자재 20,000원 x 125명 x 12월 x 30% = 9,000
					○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20,000원 x 95명 x 12월 x 50% = 11,400
					○정신질환시설입소환자 안전보험비 7,000원 x 2,300명 x 50% = 8,050
					○정신질환 요양시설 환자 의약품비 5,000원 x 2,300명 x 12월 x 50% = 69,000
					○정신질환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,000원 x 308명 x 12월 x 50% = 184,800
					○간질환자 투약관리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30,000원 x 100명 x 12월 x 50%	= 18,000
					○농어촌여성 건강검진사업	
					30,000원 x 10,000명 x 30%	= 90,000
					○척추측만증 검진비 6,000원 x 26,000명 x 30%	= 46,800
					○운동처방사 연수교육 450,000원 x 16명 x 30%	= 2,160
					○외국어 메뉴판 제작 50,000원 x 1,000개 x 30%	= 15,000
		200,000	0	200,000	05 자치단체간부담금	
					○한방산업단지 조성 중부권 공동용역사업비	= 200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40,000	0	40,000		
		40,000	0	40,000	01 시설비	
					○병원선 육상전력 사용공사	= 4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155,520	115,000	40,520		
		155,520	115,000	40,520	01 민간자본보조	
					○한센병복지협회 장비구입 (자동생화학분석기)	= 40,520
					○결핵협회장비 (엑스레이자동현상기)구입	= 35,0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가족보건복지협회 장비구입 (유방촬영장치) = 80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306,935	47,625	259,310	
		306,935	47,625	259,31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40,000,000원 x 2개소 x 30% = 24,000 ○한센병환자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2,700,000원 x 20동 x 50% = 27,000 ○방역노후 장비 보강 · 차량용 2,500,000원 x 16대 x 30% = 12,000 · 휴대용 550,000원 x 70대 x 30% = 11,550 ○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 151,987,500원 x 4개소 x 30% = 182,385 ○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 (영인 신화) 100,000,000원 x 50% = 50,000
	405 자산취득비	31,310	0	31,310	
		31,310	0	31,31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병원선 숙소 냉방기구 구입 1,430,000원 x 2대 = 2,86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병원선 숙소 세탁기 구입 = 450
					○병원선 의료장비 구입 (전해질분석기) = 28,000
2212	환경관리	25,489,617	21,053,608	4,436,009	[국 13,558,592 도 11,331,025 지 0] [균 600,000 기 0 분 0]
100	경상예산	115,664	119,781	△4,117	
120	경상적경비	115,664	119,781	△4,117	
	201 일반운영비	41,740	36,893	4,847	
		39,040	36,893	2,147	01 일반운영비 ○일반수용비 = 16,000 ○공공요금 및 체세 = 4,200 ○운영수당 = 8,760 ○급량비 = 10,080
		2,700	0	2,700	02 행사지원비 ○환경보전대상 · 상패제작 100,000원 x 7개 = 700 ·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10,000원 x 200부 = 2,0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2 여비	40,800	48,400	△7,600	
		40,800	48,400	△7,600	01 국내여비 ○ 환경관리업무추진 = 40,800
	203 업무추진비	2,400	2,400	0	
		2,400	2,4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○ 환경관리업무추진 = 2,400
	301 일반보상금	30,724	32,088	△1,364	
		8,824	7,588	1,236	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급여 34,000원 x 12월 x 4명 = 1,632 ○ 중식비 3,500원 x 12월 x 25일 x 4명 = 4,200 ○ 교통비 1,600원 x 12월 x 25일 x 4명 = 1,920 ○ 상여금 17,000원 x 4회 x 4명 = 272 ○ 피복비 200,000원 x 4명 = 800
		5,500	10,500	△5,000	09 행사실비보상금 ○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
					5,000원 x 500명	=	2,500
					○철새탐조 생태기행 참석자 급식비		
					5,000원 x 4회 x 150명	=	3,000
		16,400	14,000	2,400	11 기타보상금		
					○환경보전대상시상금		14,000
					· 단체부문		11,000
					- 대상	=	5,000
					- 금상	=	3,000
					- 은상	=	2,000
					- 동상	=	1,000
					· 개인부문		3,000
					- 금상	=	1,500
					- 은상	=	1,000
					- 동상	=	500
					○배출업소 환경단체 합동기술 지도 및 정비		
					40,000원 x 6명 x 10회	=	2,400
200					[국 13,558,592 도 11,215,361 지 0]		
사업예산		25,373,953	20,933,827	4,440,126	[균 600,000 기 0 분 0]		
210					[국 13,558,592 도 7,946,496 지 0]		
보조사업		22,105,088	19,023,477	3,081,611	[균 600,000 기 0 분 0]		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7 민간이전	30,000	33,429	△3,429	
		30,000	33,429	△3,429	02 민간경상보조 ○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= 30,000 (국) 21,000 (도) 9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2,075,088	18,990,048	3,085,040	
		22,075,088	18,990,048	3,085,04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29,987,636원 x 66대 x 75% = 1,484,388 (국) 989,592 (도) 494,796 ○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(2개소) 19,642,857,000원 x 14% = 2,750,000 (국) 750,000 (도) 2,000,000 ○ 사용종료매립지정비사업 (5개소) 10,052,000,000원 x 75% = 7,539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5,026,000
					(도) 2,513,000
					○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(4개소)
				3,700,000,000원 x 30%	= 1,110,000
					(국) 1,110,000
					○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(4개소)
				8,736,666,000원 x 51%	= 4,455,700
					(국) 2,621,000
					(도) 1,834,700
					○ 소각시설 설치사업 (3개소)
				8,820,000,000원 x 30%	= 2,646,000
					(국) 2,646,000
					○ 대기측정망 교체사업
					= 150,000
					(국) 75,000
					(도) 75,000
					○ 천수만철새도래지생태공원화사업
				1,333,845,000원 x 65%	= 867,000
					(도) 467,000
					(균) 400,000
					○ 태안군환경관리사업소 주변생태공원화사업
				666,153,000원 x 65%	= 433,000
					(도) 233,000
					(균) 200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생물다양성관리계약 (3개소) 1,066,666,660원 x 60% = 640,000 (국) 320,000 (도) 320,000
220	자체사업	3,268,865	1,910,350	1,358,515	
	206 재료비	2,100	2,100	0	○야생조수 먹이구입 7,000원 x 300포 = 2,100
	307 민간이전	456,755	646,240	△189,485	
		419,755	588,240	△168,485	02 민간경상보조 ○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 = 176,255 ○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 = 50,000 ○농약빈병 수거보상금 50원 x 5,900,000개 x 30% = 88,500 ○동북아 청소년 공동 환경조사 = 5,000 ○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사업 = 40,000 ○환경보전 현안사업 = 60,000
		37,000	58,000	△21,000	04 민간행사보조위탁 ○한중환경행정 교류회 = 20,000 ○환경의날 행사 개최 = 5,0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금강보호 캠페인 행사 지원 = 2,000
					○환경이벤트행사 지원 = 10,0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556,210	589,510	△33,300	
		556,210	589,510	△33,3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조수보호원 배치 25,000원 x 16명 x 120일 x 50% = 24,000 ○부상조수 진료 800,000원 x 16개시군 = 12,800 ○금강쓰레기처리비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60,000,000원 x 50% = 30,000 ○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0,000톤 x 20,000원 x 30% = 60,000 ○도립공원 청소인부임 (12명) = 323,010 ○야생조수 증식방사 10,000원 x 40마리 x 16개시군 = 6,4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,250,000	672,500	1,577,500	
		2,250,000	672,500	1,577,5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도립공원개발 (3개소) 1,300,000,000원 x 50% = 650,000 ○서천 봉선지 생태공원 (마산, 시초) 1,400,000,000원 x 50% = 700,000 ○청양 칠갑산 등산로 철계단설치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예산 덕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청양도립공원 집단시설 1,400,000,000원 x 50% = 700,000
	405 자산취득비	3,800	0	3,800	
		3,800	0	3,8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환경관리 민원처리용 디지털카메라 400,000원 x 2대 = 800 ○복사기구입 = 3,000
2213 수질관리		140,567,068	122,432,510	18,134,558	[국 119,829,282 도 20,694,156 지 0] [균 0 기 43,630 분 0]
100 경상예산		106,900	67,480	39,420	
120 경상적경비		106,900	67,480	39,420	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1 일반운영비	27,900	25,680	2,220	
		26,400	24,480	1,920	01 일반운영비 ○ 일반수용비 = 11,000 ○ 공공요금 및 제세 = 600 ○ 운영수당 = 4,800 ○ 급량비 = 10,000
		1,500	1,200	300	02 행사지원비 ○ 수질오염방제훈련 선박 등 임차료 = 1,500
	202 여비	34,400	38,000	△3,600	
		34,400	38,000	△3,600	01 국내여비 ○ 수질관리 업무추진 40,000원 x 20인 x 43일 = 34,400
	203 업무추진비	2,400	1,800	600	
		2,400	1,800	60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○ 수질관리 업무추진 = 2,4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1 일반보상금	42,200	2,000	40,200	
		2,500	2,000	500	09 행사실비보상금 ○먹는물제조업체 품질관리인 등 교육참석자 5,000원 x 100명 x 2회 = 1,000 ○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참석자 5,000원 x 300명 x 1회 = 1,500
		39,700	0	39,700	11 기타보상금 ○충청남도 미소방 시상금 20,500 ·대상 3,000,000원 x 1개소 = 3,000 ·최우수 2,000,000원 x 5개소 = 10,000 ·우수 1,000,000원 x 5개소 = 5,000 ·장려 500,000원 x 5개소 = 2,500 ○편의용품지원 1,200,000원 x 16개소 = 19,200
200 사업예산		140,460,168	122,365,030	18,095,138	[국 119,829,282 도 20,587,256 지 0] [균 0 기 43,630 분 0]
210 보조사업		135,399,168	121,578,530	13,820,638	[국 119,829,282 도 15,526,256 지 0] [균 0 기 43,630 분 0]
	202 여비	13,630	2,880	10,750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3,630	2,880	10,750	01 국내여비 ○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변동사항조사 = 3,630 (기) 3,630 ○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및 목표수질 지점관리 = 10,000 (기) 10,000
	307 민간이전	30,000	22,500	7,500	
		30,000	22,500	7,500	02 민간경상보조 ○금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6,000,000원 x 5개단체 = 30,000 (기) 30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135,355,538	121,553,150	13,802,388	
		135,355,538	121,553,150	13,802,388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36,809,000원 x 18개소 x 60% = 397,538 (국) 331,282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66,256
					○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(2개소) 5,321,000
					(국) 5,321,000
					· 천안 4산업단지
					1,216,000,000원 x 1개소 x 100% = 1,216,000
					(국) 1,216,000
					· 아산 인주1산업단지
					4,105,000,000원 x 1개소 x 100% = 4,105,000
					(국) 4,105,000
					○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(2개소) 1,316,000
					(국) 1,316,000
					· 금산 추부농공단지
					1,385,000,000원 x 1개소 x 66.71475% = 924,000
					(국) 924,000
					· 서산 명천농공단지
					1,060,000,000원 x 1개소 x 36.9811% = 392,000
					(국) 392,000
					○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02,500,000,000원 x 74% = 75,850,000
					(국) 61,500,000
					(도) 14,350,000
					○오염하천정화사업 = 5,324,000
					(국) 5,324,000
					○분뇨처리시설 = 1,412,000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국) 1,412,000 = 4,718,000 (국) 3,608,000 (도) 1,110,000 = 40,744,000 (국) 40,744,000 = 273,000 (국) 273,000
220	자체사업	5,061,000	786,500	4,274,500	
	201 일반운영비	55,000	0	55,000	
		55,000	0	55,000	01 일반운영비 = 55,000 ○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
	307 민간이전	6,000	9,500	△3,500	
		6,000	4,500	1,500	04 민간행사보조위탁 = 6,000 ○물관련 심포지움 및 행사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5,000	25,000	0	
		25,000	25,000	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수질환경 시책 상사업비 · 최우수 10,000,000원 x 1개소 = 10,000 · 우수 5,000,000원 x 3개소 = 15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4,975,000	743,000	4,232,000	
		4,975,000	743,000	4,232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기초생활보호치매노인 화장실 개량 2,000,000원 x 100개소 x 30% = 60,000 ○지하수 폐공관리 2,500,000원 x 100공 x 30% = 75,000 ○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 200,000,000원 x 20개소 x 50% = 2,000,000 ○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수 50,000,000원 x 80개소 x 50% = 2,000,000 ○하수도 정비 (10개소) (지방이양) 1,000,000,000원 x 50% = 500,000

